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한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주는 시사점

김은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부모책임법제 자체는 없지만,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본이념에는 부모책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부실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여 아동범죄자의 부모들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의 경우는 부모교육에 참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볼 때, 처벌보다는 부모교육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교육명령제도 시행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부모교육을 일반아동을 가진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아동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방향을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도출해 본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부모교육명령제도,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책임법, 부모책임

논문 제출일: 2009. 02. 10

최종 심사일: 2009. 03. 24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Kim, Eun-Ju, Doctoral student,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Youngsan-Gu, Seoul Korea (140-751). E-mail : sys3150@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각국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부모역할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도덕적·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동의 효율적인 선도와 재활을 위하여 부모와 가족도 아동과 동시에 선도와 재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가치관과 인격형성에는 가정 내의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족 구성원인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모는 아동양육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책임은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김선택, 1997).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률적인 논의는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입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부모책임법에서 찾을 수 있다(법무부, 2006; 38). 부모책임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인 부모교육명령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아동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부실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여 아동의 교육과 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부모책임에 대한 동향은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동범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범죄를 일으킨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들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논의 속에 2008년 6월 22일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소년법의 조항으로 시행되게 되었다.(노청한, 2008; 263-264).

결국,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입법화라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두 동향 모두 가정 내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요구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해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보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거가 되는 부모책임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는가를 다루려고 한다.

현재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이다. 호주의 경우는 2004년부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화되지 않았고, 캐나다의 부모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모책임법을 모방한 것이기에(Wilson, 2003) 본 연구에 있어서는 호주와 캐나다는 제외하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 우리나라의 부모책임 관련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부모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부모책임법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부터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부모책임법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가장 포괄적인 영역에서 부모책임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며 부모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부모책임법이 기초가 되어서 캐나다, 영국, 호주 순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이제 막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책임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부모책임법과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모델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검토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부모책임법 및 부모교육명령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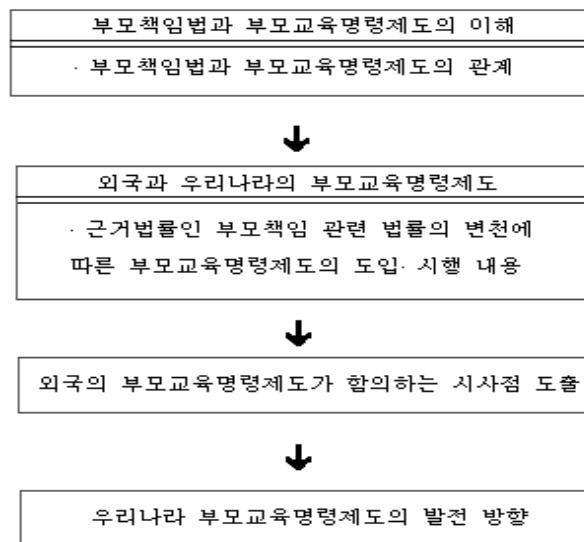
제 2장에서는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이전의 초기 부모책임법 단계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도출된 시기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부모책임도입단계와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단계로 구분하여 「아동법(The Children Act)」의 부모책임 규정과 「범죄와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교육명령제도는 구체적으로 부모교육명령과 부모교육협약으로 구분하여 알아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소년법에 소년의 교정과 재화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부모책임법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부모책임에 대한 판례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판례는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부모책임이 적용된 실제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제 4장에서는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발전적인 방향과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해 변천 역사를 중심으로 그 근거법률에 의거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문헌연구를 주된 방법으로 한다.

미국의 제도는 소년법 단계, 부모책임법 초기단계,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소년범죄에 대해 책임주체와, 책임형태 그리고 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제도는 아동법 단계에서의 부모책임 개념도입과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단계로 구분하여 부모교육명령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이제 막 도입된 제도이기에, 정확한 실제 운영 사례를 파악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로 도입되기 이전에 일부 보호관찰소의 자체 교정프로그램으로서 부모교육명령이 운영되었었다는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보충적으로 부모책임에 대한 실제 판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공론화와 제도의 법제화되기까지에 관한 논의는 부모교육명령제도를 규정한 ‘소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법사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내용들을 분석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부모책임법과 부모교육명령제도¹⁾의 관계

‘부모책임법’은 아동이 사회에 대해서 행한 심각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법이다(Graham, 1999). ‘부모책임법’은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근거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이론 및 경험연구결과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문제행동과 가족 특히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법무부, 2006; 38).

Pagliocca, et al.,(2002)에 의하면 부모책임법의 핵심은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부모책임법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를 처벌하겠다는 위협적인 상징으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더욱 통제하고 감독하게 만듦으로서 소년 범죄자들을 감소시키거나 뿌리 뽑을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부모에게 올바른 역할을 부여하도록 교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전제(presumption)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책임법에 의한 부모의 책임 이행 방식으로는 민사적 책임 부과, 형사적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병행하여 부모에게 교육 부과를 명령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즉,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부모교육명령제도는 부모책임법의 근거 하에 부모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소년 범죄자의 부모나 보호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에 참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사법명령이다(법무부, 2006; 38).

1) 여기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는 미국에서의 부모교육명령(보호자 교육명령)제도,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인 부모교육명령(자녀양육명령)제도, 부모교육협약(자녀양육협약) 그리고 뒤에서 검토하게 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명령(보호자 교육명령)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총칭적인 개념이다.

II.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

1. 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

1) 소년법 단계

소년법 단계에서 소년법원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동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법원은 아동의 처벌보다는 교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소년법원은 부모가 아동을 감독하고 훈련하는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국친(國親)으로서 대신 부모의 역할을 해서 비행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도해야 한다. 아동의 비행문제를 전담하는 소년사법체계(juvenile justice system)는 이런 점에서 국친사상(parens system)²⁾에 기반을 두었다. 달리 말하면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아동들을 가정에서 부적절하게 보호하고 감독, 처우를 받은 희생자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아동의 위법행위는 비행아동들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해야 할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본 것이다(공계순, 2008). 이런 점에서 국가는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입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자 소년법원이 아동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데 무능하다고 보여졌다. 이는 국가가 국친으로서의 부모역할을 대신하는 데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2)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s) 초기 단계

1950~60년대의 초기 부모책임법제에서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들에게 민사, 형사, 혹은 준(quasi)형사책임을 부과하였으며(Harris, 2006) 그 중에서도 민사책임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2)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교정·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민사책임을 묻는 부모책임법제의 방식은 미성년자녀에 의해 고의적으로 야기된 손해와 해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리배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제이다. 부모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1951년과 1960년대 아동·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게 되자, 아동 비행의 원인으로써 부모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부모의 민사적 책임의 목표는 비행아동의 행위에 대해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고, 적어도 처벌을 위협하는 것이고, 부모가 그들의 아동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다(Graham, P.K, 2000: 1727).

따라서 이에는 민사적 손해의 위협이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아동을 더 잘 감독하고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김지선, 2005). 이러한 민사 책임을 부여하는 부모책임법은 우선적으로 아동 범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햄프셔 주를 제외한 50개 주에서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리배상책임을 지도록 부과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대리배상책임은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절도, 자동차 손괴등과 같은 경미한 행동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김지선, 2005).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민사책임을 관한 법률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창한, 2008: 278-279).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비행에 대한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입히거나 인명을 살해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다.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5,000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버지니아주에서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률안 내용은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모에게 공공재산의 파손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와 같이 살거나 또는 부모 중 한 명과 같이 사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듯, 부모책임법들이 널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은 아마도 많은 어린 아동 범죄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동이 일으킨 손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Pagliocca, et.al., 2002: 480)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인 가난한 소수의 편모가족의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Laskin, 2000: 1212).

3) 새로운 부모책임법 단계(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단계)

1990년대의 새로운 부모책임법은 자녀의 범죄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부모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아동의 비행과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97년까지 17개주와 많은 시 조례로서 구체적인 부모책임법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은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 데 실패했거나, 부적절한 감독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부모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Graham, P.K, 2000: 1732-1733). 이럴 경우, 새로운 부모책임법에서는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부모책임법의 도입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사이에 청소년 범죄가 75%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로서 탄생한 것으로 1990년대의 법적인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Graham, P.K, 2000: 1721-1722). 청소년범죄율이 1993년에 최고조를 달하다가 1993년에서 현재까지는 다소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청소년범죄율은 1980년대 중반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 1987년과 1993년 사이의 학교총기사건으로 인한 살해와 폭력으로 청소년의 체포율이 이전보다 두 배로 증가하였다. 결국 현재의 다소 감소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도 청소년 범죄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1996년에 총기사건으로 각각 15명과 30명이 살해된 반면, 미국에서는 영국의 30배인 939명이 총기사건의 사망자로 보고되고 있다(Graham, P, K, 2000: 1723).

이에 각 주에서는 기존의 부모책임법제를 변형하거나 1990년대부터 새로운 부모책임법을 입법화하여 부모에게 좀 더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부모책임법제는 주법으로 시행된 주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시 조례(ordinance)로 시행되고 있다(Schmidt, 1998: 677).

새로운 부모책임법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주법이나 조례내용으로는 무단결석법(truancy law)조례가 있는데, 아동이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내리는 형사처벌이다. 이는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아동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책임지는 부모나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통행금지명령조례(curfew ordinances)는 아동이 밤에 어른을 동반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장소에 있을 경우에 규정하는 처벌로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contributing to delinquency of minor)이 있다.

결국 새로운 부모책임법(newer parental responsibility laws)은 이전의 민사부모책임법(civil parental liability laws)과는 달리, 부모들이 자신들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겨서 부모들이 범죄처벌을 받게 만든 것이다(Pagliocca et al., 2002; 480).

이러한 부모책임법은 대리책임의 법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개인의지를 가정하고, 의도적 행위에 근거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데 반하여 부모책임법은 대리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귀속책임이라는 개념과의 연관성 때문에 형법에서 불안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Cahn, 1996: 410). 이러한 부모책임법은 대리책임 원칙의 법리상 문제와 인과관계의 문제점으로 부모를 처벌하기가 실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김지선, 2005).

한편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부모책임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리고 부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부모교육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모책임법의 모델이 되는 법령의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Street Terrorism and Prevention Act(1988)조례 272 조항을 들 수 있다(Graham, 2000; 1736). 272조항의 목적은 18세 이하의 자녀의 법적인 후견인이나 부모는 합리적인 돌봄, 감독, 보호 그리고 비행아동에 대한 통제를 할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LA시의 검사국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특히 청소년 갱 활동과 청소년비행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을 야기하는 데 부모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272조항은 청소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었다.

수정된 272조항에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동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하는 데 실패한 잠재적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규정되었다. 아동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완전한 부모역할에 대해 법원은 부모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로서 ‘합리성(reasonableness)’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였다(Graham, 2000; 1737). 형사적인 책임은 부모가 전적으로 돌봄의 ‘합리성’기준에서 벗어나서 형사적 태만에 이르는 행동에 있었을 때만이 부여되어진다.

또한 제272조항에서는 부모교육강좌(parenting course)를 부모들이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비행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기소가 면제되어질 수 있다(Harris, 2006).

이처럼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부모책임법은 비행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훈련(parental training)과 자녀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

한 적절한 환경을 대신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raham, 2000; 1739). 부모들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부모들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제기되는 데 있다(김지선, 2005). 제 272조항의 다이버전³⁾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합리적인 부모책임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으며, 부적절한 부모통제와 감독이 청소년비행의 원천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오리건 주에서는 15세 이하의 아동이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모나 법적인 후견인 혹은 보호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동에 대한 감독 실패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부모가 초범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 범죄인 경우에는 부모교육명령에 참여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김지선, 2005). 만약 부모가 자녀의 불법적인 행동을 사법당국에 알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제 272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게 되면 범죄에서 면죄되어질 수도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네바다주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직업보호제도(Job Protection)를 마련해놓고 있다(노청한, 2008: 269). 이 제도는 부모책임법제에서 적용되는 법원의 명령을 가난한 소수의 편모가족은 생계라는 이유로 이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마련하였으며, 부모들이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결근과 같은 직업상의 애로사항을 법률로써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마련은 부모들이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근과 같은 직업상의 애로사항을 법률로써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들이 직업활동에의 제한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1990년 이전·이후의 부모책임법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다이버전(diversion)이라 함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사법절차에서 제외시키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비행이 경미한 경우 반성과 개선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자가 감호능력이 충분하여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처분의 한 형태이다.

<표 1> 미국의 1990년 이전·이후의 부모책임법의 내용과 특징

시대구분	부모책임법명칭	부모책임법의 내용과 특징
1990년대 이전	민사부모책임법(civil parental liability laws)	부모책임법제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민사책임(civil liability)의 형태가 주를 이룸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부모책임법(newer parental responsibility laws)	•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인해 부모에게 민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형사적인(criminal) 강력한 책임(liability)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부모의 책임·역할이 강조됨 • 부모의 의무조항을 세분화하여 제시함 • 부모교육명령제도(부모교육과정 참여명령제도)를 도입 예) 캘리포니아주의 272조항의 다이버전 프로그램과 오리건주의 부모교육명령과정

2.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

1) 부모책임 도입단계

부모로서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은 두 가지 이념을 나타낸다. 첫째,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 대해 본분을 다하여 행동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대표적인 영국의 법은 1989년의 「아동법(Children Act)」이다.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부모의 책임'의 개념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부모의 책임은 아동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며, 중요하게 강조된 원칙 중의 하나이다(Brenda, M, Hoggett, 1993: 9).

1989년 아동법 제3조 제 1항에서 부모의 책임은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그의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rights), 권한(powers), 책임(responsibility)과 권위(authority)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통제하는 부모의 권리는 부모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Brenda, M, Hogget에 의하면, 아동법에서 전제하는 가정은 아동을 양육하는 곳으로, 부모들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원칙적인 역할은 부모들을 간섭하기보다는 부

모들을 돕는 것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이라는 현실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아동법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부모의 책임’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단계

영국의 대표적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거법⁴⁾은 1998년의 「범죄와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으로 이 법은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1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청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으로 하여금 부모가 자녀의 범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당국도 아동의 비행으로 장기간 학교를 결석할 경우에도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배경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신노동당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다. 신노동당 사회정책은 특히 청소년 범죄분야에서 자녀의 규범적인 지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Munci, 1999: 156). 청소년비행에 있어 부모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부모책임과 연관 지어서 부모교육명령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낸 배경은 영국의 신노동당 사회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가족 및 부모책임이 중요한 슬로건이 된 사회정책의 맥락에서이다. 이에 부모는 자녀를 통제·감독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부모의 도덕적 책임과 동시에 유급노동참여를 통한 경제적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부모의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이 어렵기에 부모가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⁵⁾의 시행은 구체적으로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s)’과 ‘부

4)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거법에는 「범죄와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이외에도, 2003년의 「반사회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 그리고 2003년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이 있다.

5)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출처는 대부분 <http://www.tameside.gov.uk/yot>와

모교육협약(Parenting Contracts)’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지선, 2006).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s)’은 자녀가 범한 죄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care)와 통제(control)를 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부모교육명령의 세부내용으로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 반사회적 행동명령(anti-social behavior order), 성범죄자명령(sex offender order)이 부과된 경우에 부과되며, 그리고 Education Act (1996)의 443조항과 444조항에 의거해 아동이 학교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에게 주어진다.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나 후견인은 상담, 후견인 회의(session)에 참여해야 하고, 여섯 달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씩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매일 학교에 가는지 혹은 매시간 어떤 시간에 집에 있는지를 부모가 살펴봐야 하는 구체적인 요구가 법원에 의해 부여되며, 이는 열두 달 동안 지속된다.

만약, 부모가 부모교육명령에 대한 위의 요구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⁶⁾과 함께 부모교육명령을 받는 기간 동안 행동하여야 하며, 명령이행을 재약속하고 그 약속이 제때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결한다. 또 법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이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부모교육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독공무원은 법원에 명령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1회 이상의 이유 없는 위반이 있었다면 감독공무원은 명령의 검토를 위해 부모를 만나야 한다. 법원의 부모교육명령 요구를 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관은 1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모에게 부과할 수가 있다(김지선, 2006).

한편, ‘부모교육협약(Parenting Contracts)’은 부모와 청소년범죄팀(YOT)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으로, 지방기관⁷⁾사이에서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진다. 학교와 지방교육당국은 학교로부터 배제되었거나 혹은 무단결석한 청소년의 부모와 함께 부모교육협약에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범죄팀(YOT)은 반사회적행동과 범죄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의 부모와 함께 부모교육협약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범죄의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도 부모역할협약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부모교육명령과는 달리 청소년범죄의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

<http://www.crimereduction>이다.

6) 청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은 청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영국과 웨일즈의 모든 주에 있으며, 경찰서, 보호관찰서비스, 사회서비스, 건강, 교육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7) 지방기관에는 YOT, 학교, 지방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y), 개인부모들이 속한다.

다. 부모교육협약에는 2가지 동의가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아동의 부모가 부모교육프로그램(parenting program)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이 규칙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 한편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의 효과는 부모역할 전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보고된다(김지선, 2005).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일종의 민사명령(김지선, 2006)으로 아동 범죄자의 부모로 하여금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우선 명령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과는 달리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완화된 부모책임법제로 볼 수 있다.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내용과 특징

부모교육제도	제도적 근거법	내용과 특징
부모교육명령제도 (parenting orders)	범죄와 무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 법원의 강제적인 민사(civil) 명령제도임. • 아동안전명령, 반사회적 행동명령, 성범죄자 명령이 부과된 경우 그리고 아동이 학교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주어짐. • 부모는 상담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부모교육협약제도 (parenting contracts)	범죄와 무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 부모와 청소년범죄팀(YOT)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민사(civil)명령제도임. •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와 “아동과 청소년이 규칙적으로 학교에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약해야 함. • 범죄의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도 부모교육협약에 참여해야 함.

III.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

1. 부모교육명령제도 근거법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의 제도적인 근거법은 「소년법」이다. 「소년법」의 목적(제1조)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에서 부모교육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서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제2조)를 보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監護)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개정 「소년법」 조항 중 신설된 제32조의 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항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모교육명령제도

우리나라 부모교육 명령제도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소년법 규정과 그 이전에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시행된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강력 범죄화되어져 가고 있고,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고자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자는 추세에서이다. 그동안 보호관찰처분집행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비행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마땅히 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할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책임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공론화가 제기되어져 왔다.

그 한 예로 2005년과 2007년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소년범죄나 비행의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

억압 등이라는 사실에 감안해서 청소년의 보호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모(보호자)교육명령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통과된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호자교육명령제도의 교육내용은 주로 자녀의 심리과악방법과 이에 맞춘 바람직한 교육방법, 자녀와의 소통법 등이며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동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 2호에 “제 32조의2 제 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보호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부모교육명령위반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의원들의 의원 입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두었고 이것이 채택되어 통과되었다. 이는 보호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여부가 필요한 것에서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호자교육명령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에도 보호자교육프로그램은 실제 운영이 되고 있었다(이근식, 2005)는 사실이다. 2005년에 한 지방법원 소년부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적이 있었다. 2005년 4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소년법 제 36조 제 2항⁸⁾을 준용하여 비행소년 9명에게 보호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보호자 교육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는 가족심리치료, 부모역할훈련 등의 보호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전국 14개 소년원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좌담회에 참가하거나 면회를 온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디오 또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의료소년원 등 5개 의료소년원과 서울·광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의 입원 또는 법원의 상담조사 의뢰의 경우 교육일정을

8) 소년부 판사는 제32조 1항 제1호 제6호 제7호의 처분과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2조 1항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으로 되어 있다.

사전에 통보하여 참석한 보호자 또는 면회·동행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올바른 자녀지도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는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지한 후 참석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 소개, 건강한 가정과 바람직한 자녀지도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제화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처음으로 있었던 부모교육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의 경우, 30명의 부모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모가 교육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참석률도 비교적 높다고 보고된다(김지선, 2005).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저항 없이 순조롭게 도입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의 비행청소년대상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아버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Ghate And Ramella, 2002).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자식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전통사상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육열은 학부모 교육 참여의 배면에 자리한 동기이자 에너지를 의미한다(이종각, 2000). 김희복(1992)의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한 정의 즉,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지원행위를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과 우리나라 부모들의 문화차이라고 해석된다.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 사후적인 부모교육뿐만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부모책임 실제 판례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부모책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부

모책임이 실제 적용된 판례들은 존재하고 있다. 첫째, 2004년 10월 아동이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절반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1회 판결에 의하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윤모(당시 4세)군의 부모가 S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부모의 책임50%를 제외한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천인성, 2004). 이러한 판례의 근거는 부모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데서 부모의 책임을 50%로 인정하였다.

둘째, 2008년 12월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며 성장한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그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민사부는 A(18세)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7세)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8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전성훈, 2008).

이러한 판례의 근거에서 볼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만약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책임이 실제 적용된 판례는 아동복지적인 관점에서 부모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부모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을 암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함의하는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변천역사에 따라 비교해서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해 외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부모책

임을 강조하는 점이다.

미국이 부모책임을 강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에서 살펴본듯이, 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흐름은 처음에 소년법단계를 거쳐 부모책임법 초기 단계 그리고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부모책임법 단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소년법단계에서 미국의 소년법원은 소년사법체계에서 국친사상에 기반을 두어 국가가 국친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동의 비행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공계순, 2008). 그러나 아동범죄가 심각하게 되자 더 이상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아동의 비행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책임법 초기 단계에서의 부모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심각성이 더해 가는 아동범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추세에서 새로운 부모책임법 단계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부모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새로운 부모책임법 단계에서 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부모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부모책임 개념의 도입은 아동법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듯이, 아동법 전체의 기본적인 개념은 부모의 책임(Brenda, M, Hoggett, 1993: 9)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단계에서 부모책임을 강조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배경에서 잘 나타나진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 부모와 가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지지가 아니라 부모책임과 연결되어 부모교육명령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신노동당의 사회정책의 여러 측면 중에서 가족 및 부모책임을 중요한 슬로건이 되고 있다는 맥락에서이다(Munci, 1999: 156).

이렇듯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그 나라 역사와 현재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근본이념에는 부모책임을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은 부모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하지만, 부모책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아동복지관점에서 부모책임을 강조된 우리나라의 실제 부모책임을 적용하는 관례에 거치지 말고 앞으로 부모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부모교육을 강조·실시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시사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부모책임법에서는 부모를 처벌하기보다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의 실시에도 더 주안점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수정된 제272조항에서 부모교육강좌(parenting course)를 부모들이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비행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기소가 면제되어질 수 있다(Harris, 2000)고 규정한 점은 부모들에게 처벌보다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뒷받침해준다.

미국에서 이처럼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부모들을 기소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지적되는 데 있다(김지선, 2005). 부모책임법을 통해서 부모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한데 주(州)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비행에 대해서 그 당시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아동의 비행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부모가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부모책임법은 아동의 비행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리책임이라는 법리적인 문제에서의 쟁점이 있는데(Cahn, 1996: 410), 부모의 기소에 있어 어려움 역시 대리적인 책임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를 기소하는 대신에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대리적인 책임의 법리적인 쟁점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부모교육명령’과 ‘부모교육협약’ 두 가지 제도를 도입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두 가지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일종의 민사명령으로, 부모교육명령과 부모교육협약 둘 다 모두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부모교육협약제도는 특히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의 효과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 자녀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지시등 부모역할 전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보고된다(김지선, 200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교육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를 간략히 비교해 보자면, 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1990년대 이후 비행청소년의 부모에게 우선 형사처벌을 내린 후, 그 부모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기소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영국은 비행청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먼저 부모교육명령을 내린 후 명령을 불이행하면 민사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에서 볼 때,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모델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김지선, 2006).

이렇듯 미국과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서 부모교육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에서 볼 때,

특히 영국의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의 효과에서 나타난 부모역할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서도 교육을 미참가한 부모들을 과태료등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부모들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유인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셋째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결과적인 시사점으로,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사후대처가 아니라 사전예방으로의 전환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전예방으로의 전환은 외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실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부모책임법제에서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실시는 높은 수준에 있는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오리건 주의 실버톤에서는 부모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을 시행한 첫 해에 청소년범죄가 40%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선,2005)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청소년비행의 재범률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초범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영국 역시 청소년비행의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범죄의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도 ‘부모교육협약’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아동범죄의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사점들과의 연관성은 새로운 부모책임법 단계에서 부모책임과 부모교육을 강조하는 흐름은 곧 21세기 외국의 소년사법 패러다임의 동향이(법무부, 2006, 35-38)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아동범죄의 재범예방에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새로운 부모책임법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아동의 범죄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노출된 아동의 대부분 가난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askin, 2000: 1212). 새로운 부모책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원의 명령인 부모교육명령에 가난한 환경의 부모들은 생계 이유로 이행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네바다주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법원의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직업보호제도(Job Protection)를 마련해 놓고 있다(노청한, 2008: 269). 이는 부모들이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결근과 같은 직업상의 애로사항을 법률로써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교육명령에 따른 부모들의 직업활동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제도로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 대부분이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생계에 바쁜 부모들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부모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직업보호제도(Job Protection)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성공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부모들에게 부모교육명령을 제도와 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예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에도 사실 부모의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범죄자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노청한, 2008: 277),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선, 2005).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높은 것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자식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전통사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교육명령에 생계나 시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과는 또 다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원의 의무적인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의하여 실시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는 부모교육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일차적인 초범예방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대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성격을 갖는

다는 점은 자녀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비행에 가담할 위험성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김지선, 2005)의 근거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우리나라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보완되어진다면 우리나라 부모교육명령 제도는 아동범죄의 재범예방에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입법화된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시사점과 도입이 가능한 제도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계순(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김선택(1997).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논총, 제8집, 80.
- 김지선(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6).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 30호. 123-124.
-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청한(2008). 외국의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보호자교육의 입법화 추세 및 사회 내 처우로서의 활용 현황 개관. 법조, Vol. 621, 262- 285.
- 법무부(2006). 보호 통권 18호(2006. 12). 법무부. 30-38.
- 소년법 일부개정(2007. 12. 21)안. 법률 제 8722호.
- 이근식(200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이종각(2000). 교육열 개념의 재정립, 출처: 오만식의 (2000)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제 1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전성훈(2008). “10대 성범죄, 부모도 책임 있다”. 연합뉴스, 2008. 12. 14.
- 천인성(2004). 판례, “어린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절반은 부모 책임”, 중앙일보, 2004. 10월 10일자.
- Brenda, M, Hoggett (1993). Parent and Children, 4th. ed.. Sweet & Maxwell,
- Cahn, Naomi R.(1996). pragmatic Questions About Parental Liability Statutes, *Wisconsin Law Review*, 399-449.
- Ghate and Remella (2002). Positive Parenting, Policy Research Bureau For The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Board.
- Graham, P, K(2000). Parental responsibility laws: let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33, 1719-1754.
- Harris L, J, (200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al Responsibility Laws: Sending Messages, but What Kind and To Whom ?
- Laskin, E, R.(2000). Parental Liability Statutes and Minority Mother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 37, 1195-1217.
- Muncie, John (1999). Institutionalized intolerance: Youth Justice And The Crime and Act. *Critical Social Policy* Vol. 59, 147-175.
- Pagliocca, P, M (2002). Parenting and the laws: Handbook of parenting, Second Edition,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pp 463-481.
- Schmidt, Paul W,(1998). Dangerous Children and The Regulated Family: The Shifting Focus of Parental Responsibility Law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73. 667-698.
- <http://www.opsi.gov.uk>

<http://www.tameside.gov.uk/yot>

<http://www.crimereduction>.

<http://likms.assembly.go.kr/law>

<http://www.naver.com>. 연합뉴스, 2008. 12. 14

Abstract

A study on Parenting Orders

Kim, E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tracting ideas from examples of Parenting Order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ngland in order to formulate substantial alternatives to the Korean Parenting Orders system. The method of study is done through documentary study.

The major idea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 in three-USA, England, korea-countries, 'Parenting Orders' is based on 'parental responsibility'. The common content of the 'Parenting Orders' emphasizes on participating in parenting program rather than punishing parents that did not attend 'parenting program'.

Second, in view of cultural difference, the Korean Parenting Orders system is expected to be more successful than the foreign Parenting Orders system.

Third, considering successful result of 'Parenting Program', 'Parenting Orders' can be applied to every parents.

Fourth,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eded to 'Parenting Order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child from committing crime.

Key words : Parenting Orders, parental responsibility, parenting program.

* Doctoral student,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